

의과대학 성적평가 및 유급에 관한 규정(3-5-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및 의과학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를 변경, 보완하여 성적의 평가 및 유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 3. 11)(개정 2000. 11. 29)(개정 2011. 9. 22)

제2조(이수학점) 의과대학 및 의과학대학은 학기제를 택하여 학칙 제37조의 직전 학기 성적에 따른 능력별 학점취득제는 적용받지 않는다.(개정 '96. 3. 11)(개정 2000. 11. 29)(개정 2011. 9. 22)

제3조(출석점수) 삭제 (개정 '96. 3. 11)(삭제 2000. 11. 29)

제4조(유급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유급이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의 진급을 불허한다.

1. 각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미만인 자.(개정 98. 3. 2)(개정 2000. 11. 29)
2. 의학과외의 경우, 각 학기별 의학과 수강과목 중 1과목 이상 낙제인 자.
(개정 '98. 3. 2)(개정 2000. 11. 29)
3. 의과학대학 및 간호학과외의 경우, 각 학기별 간호학과 전공필수 수강과목 중 1과목이상 낙제인자.(개정 2000. 11. 29)(개정 2011. 9. 22)
4. 삭제 (개정 '96. 3. 11)(삭제 2000. 11. 29)

제5조(학점인정) 유급된 학기에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되며 해당학기의 전 과목을 재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1. 29)

제6조(재시험 및 추가시험) 재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재시험 응시자격은 각 학년 성적 평균 평점이 2.0이상인 자로, 낙제과목이 1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교과목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할 수 있다.(개정 '96. 3. 11)(삭제 2000. 11. 29)(개정 2001. 12. 1)(개정 2011. 9. 22)

제7조(제적) 동일학기 연속 3회 또는 총 4회 유급자는 제적한다.(삭제 2001. 12. 1)(신설 2007. 3. 22)(개정 2009. 3. 1)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